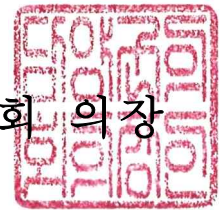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3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1인 가구라는 한정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던 조례를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적 고립가구로 변경하여 담양군에 거주하는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가. 1인 가구 → 사회적 고립가구 변경 포괄적 의미 부여(안 제1조)

나. 1인 가구 정의 삭제(안 제2조제1호)

다. 적용범위 1인 가구 → 사회적 고립가구 변경(안 제4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3. 10.~3. 16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담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·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1인 가구”를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 가구 고독사”를 “고독사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1인 가구 중 경제적”을 “경제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담양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1인 가구”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 2. ~ 5. (생략) 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 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	<u>담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·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4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사 회적 고립가구-----. 제6조(실태조사) ① ----- 고독사 -----

태조사를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제7조(지원대상)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 1. <u>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</u>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<u>1인 가구</u>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. 4. (생 략)	----- 있으며,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. 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. 1. <u>경제적</u>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 <u>가구</u> ----- ----- 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
--	--